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현행 수입증지 조례에서 판매인의 지정 및 자격요건등을 정함에 있어 판매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판매인의 결격요인 및 판매인의 승계 조항은 판매인의 지정 및 신청 조항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삭제
(안제9조, 안제15조)
-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회원간의 이익금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 삭제(안제22조제2항)

□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판매인의 결격요인, 판매인 지정 신청, 판매인 승계, 판매수익금 관리 조문중에서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 참고적으로 현행 파주시수입증지조례의 제8조(판매인 지정)과 제22조(판매수익금 관리)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현행 조례 제8조 3항의 경우 「직장금고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주민과 직장금고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 조례 제22조 1항의 경우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금고 설치규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금고가 판매인 지정을 통해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그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는 직장금고 스스로가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